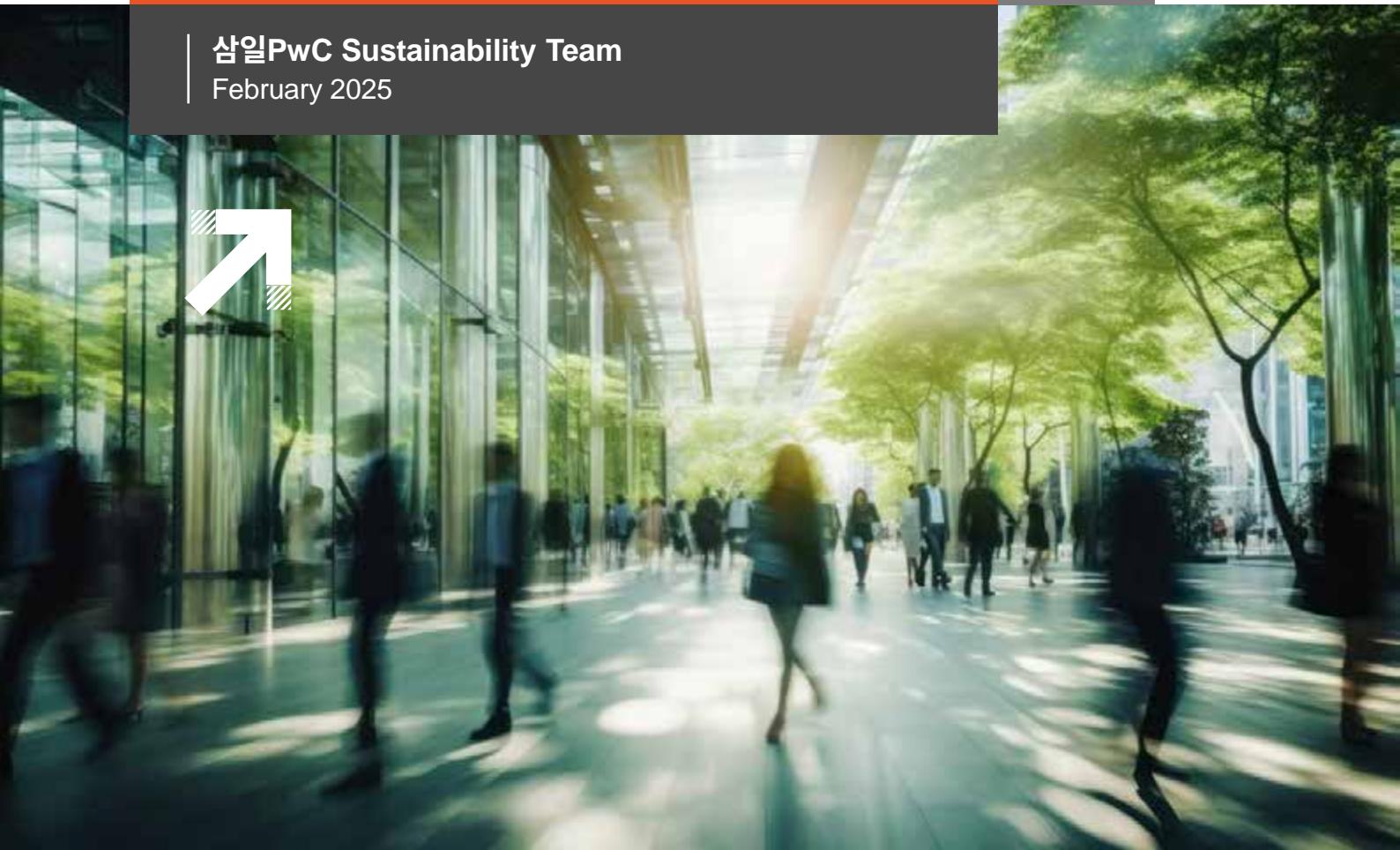


EU 옴니버스 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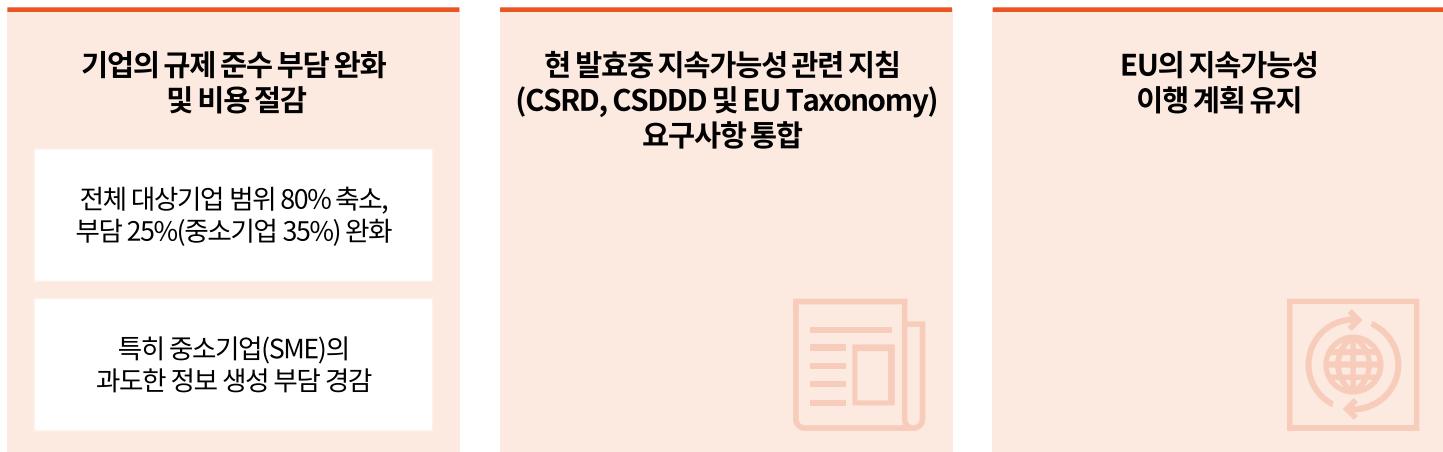
| 삼일PwC Sustainability Team
February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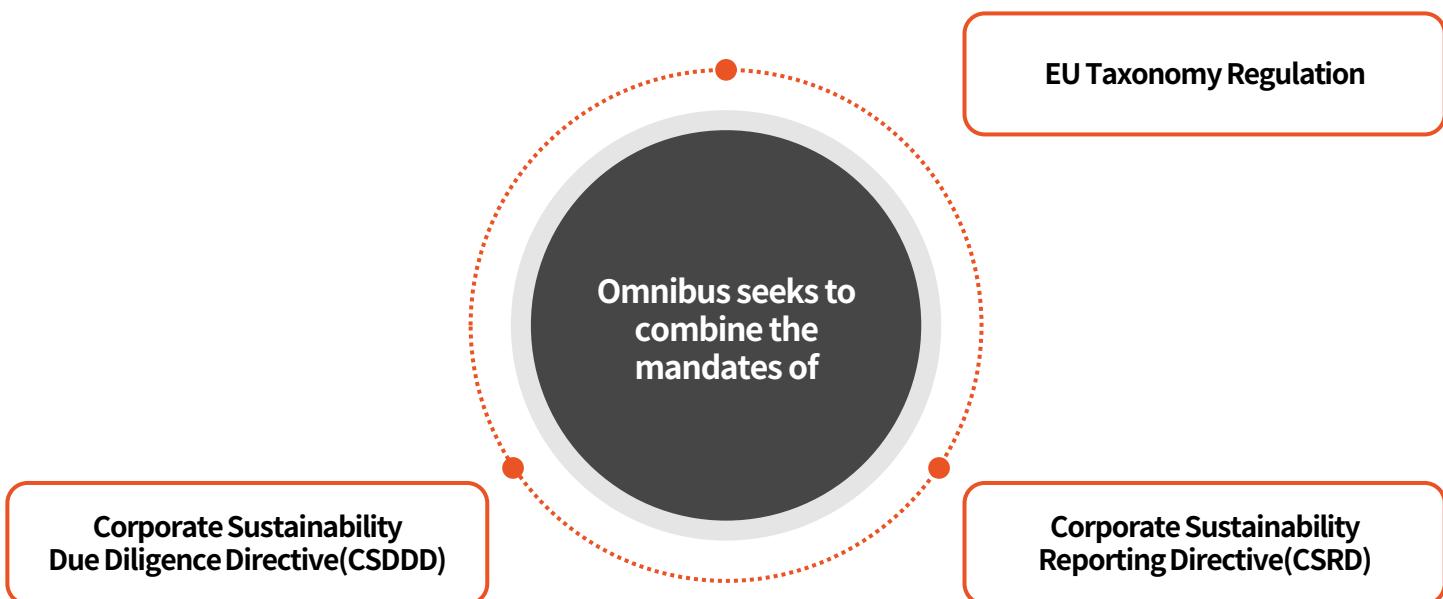
1. EU 옴니버스 패키지 도입 목적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 EU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를(EU Omnibus Proposal - Simplification Omnibus Package)제안 하였습니다. 이는 지속가능성 주제에 관한 EU의 기존 지속가능성 보고 (CSRD^{*1}, EU Taxonomy^{*2}) 및 실사 (CSDDD^{*3}) 요구사항을 통합하고 비례화^{*4} (Proportionality), 단순화^{*5} (Simplification)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및 공시의 무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EU 옴니버스 도입 이유 및 목표



Omnibus seeks to combine the mandates of



1)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EU 지침

2) EU Taxonomy: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기준을 정의하는 EU의 분류 체계

3)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4)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의무를 차등 적용

5)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의무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2. EU 옴니버스 주요사항

2-1. CSRD

적용 대상기업 및 적용시기 비교

구분	현행 CSRD		옴니버스 제안	
	규모(초과)	시기	규모(초과)	시기
Wave 1 (상장사)	임직원 500명, 순매출 €5천만, 총자산 €2.5천만 (3개중 2개 기준 충족)	2024년 정보 2025년 공시	• 임직원 1000명 & • 순매출 €5천만 또는 총자산 €2.5천만	변동 없음
Wave 2 (비상장)	임직원 250명, 순매출 €5천만, 총자산 €2.5천만 (3개중 2개 기준 충족)	2025년 정보 2026년 공시	상동	2027년 정보 2028년 공시
Wave 3 (상장 중소 및 소규모 금융)	임직원 10명 이상 250명 미만, 순매출 €5천만, 총자산 €2.5천만 (3개중 2개 기준 충족)	2026년 정보 2027년 공시	상동	2028년 정보 2029년 공시
Wave 4 (Non-EU 모기업)	CSRD 보고 대상 EU 종속회사 또는 사무소 (순매출 €4천만) 존재 & EU 역내 순매출 €1억5천만	2028년 정보 2029년 공시	회계 지침 대규모(*) EU 종속기업 또는 사무소 (순매출 €5천만) 존재 & EU 역내 순매출 €4억5천만	변동 없음

(*) 회계 지침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23/2775 Article 1(4))상 정의된 대규모 기업 정의: 다음 세 종 둘 이상(임직원 250명, 순매출 €50M, 자산 €25M 초과)

제안 주요 내용

보고 대상 기업 범위 조정	임직원 1,000명 초과 대기업으로 보고 범위 제한 (순매출 5천만 유로 또는 총자산 2천5백만 유로 초과 기업 기준 유지) 임직원 1,000명 이하 대기업 및 상장 중소기업 자발적 공시로 변경
비상장 중소기업 대상 자발적 공시기준 도입	의무 보고 대상이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이 채택 가능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공 예정 (VSME: 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for SMEs, 2024.12 EFRAG 발표)
가치 사슬에 속한 기업의 정보 보고범위 변경	보고기업이 가치 사슬 내 임직원 1,000명 이하 기업으로부터 자발적 중소기업 공시기준(VSME)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한하여 요청 가능하며, 산업 내 일반적 공개되는 지속가능성 정보는 요청 가능
부문별 공시 기준서 (Sector-specific standard) 개발 철회	보고 데이터 포인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 부문별 공시 기준 도입은 하지 않을 예정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 수준 완화	현행 CSRD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관해 제한적 확신에서 단계적으로 합리적 확신으로 강화 예정이었으나, 인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한적 확신으로 유지

2. EU 옴니버스 주요사항

2-2. CSDDD

적용 대상기업 및 적용시기 비교

구분	현행 CSDDD		옴니버스 제안	
	규모(초과)(*)	시기	규모(초과)(*)	시기
첫 번째 적용 대상 기업	순매출 €15억 & 임직원 5천명	2027년 7월 26일	순매출 €9억, 임직원 3천명	2028년 7월 26일
두 번째 적용 대상 기업	순매출 €9억 & 임직원 3천명	2028년 7월 26일		
세 번째 적용 대상 기업(**)	순매출 €4.5억 & 임직원 1천명	2029년 7월 26일	변동 없음	변동 없음

(*) EU 역외기업은 임직원 조건이 없으며, 순매출은 역내 순매출 기준임.

(**) 로열티 수익기업은 상기 조건과 무관하게 로열티 수익 €2,250만 & 역내 순매출 €8천만 초과인 경우

첫 번째 대상 기업(매출 15억 유로, 직원 5,000명 초과)의 단계적 도입 일정이 2027년 7월 26일에서 2028년 7월 26일로 연기됨에 따라 두 번째 대상 기업의 시행 날짜와 일치하게 됩니다.

제안 주요 내용

공급망 기업 실사범위 조정	원칙적으로 직접(Direct) 공급망 대상 기업에 한정. 단, 간접(Indirect) 공급망의 경우, 우회 공급 사례나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실사 수행
실사 모니터링 주기 변경	기업 실사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간격을 1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변경
이해관계자 참여 범위 명확화	이해관계자의 정의를 간소화하고, 회사, 종속기업, 공급망의 제품, 서비스, 운영에 의해 직접적(Direct)으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커뮤니티로 제한
벌금 원칙 명확화	최소 벌금 기준 (기준 벌금 조항에 명시된 '전 세계 순매출액 5%" 상한 벌금 관련 사항)은 삭제됨. 위원회가 회원국과 협력하여 벌금 수준을 결정하는 지침을 개발하도록 요구
민사 책임 관련 변경	기존 민사책임 규정은 삭제되고, 국가별 개별적 민사 책임 제도로 변경됨. 다만 벌금 부과 기준 및 범위는 별도 가이드를 통해 상세 규정이 마련될 예정
기후 전환 계획 관련 조항 변경	기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채택 및 이행' 의무에서 '이행' 의무가 삭제되고, 이행 조치가 포함된 계획 수립을 요구하도록 변경,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CSRD 지속가능성 보고 체제에 보다 일관되게 변경

2. EU 옴니버스 주요사항

2-3. EU 택소노미

EU 옴니버스의 Taxonomy 공시는 EU Green Deal과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Opt-in 제도를 도입하여 각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자발적 공시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 적합성 공시를 인정하여 기업에게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고 경제활동의 점진적인 환경 전환을 촉진하여 전환 금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현행 EU Taxonomy	옴니버스 제안
의무공시 대상	CSRD 적용 대상 기업	임직원 1,000명 초과 & 순매출 €4억5천만 초과
Opt-in ⁶⁾ 제도 신설	없음	직원 1,000명 초과하나, 순매출 €4억5천만 초과하지 않는 대규모 기업 대상 • Taxonomy 적합 매출 및 CapEx KPI 필수 공시 • OpEx KPI 자발적 공시
부분 적합성 공시 (Partial Taxonomy- alignment)	불인정	모든 택소노미 기술 심사 기준 (SC & DNSH) ⁷⁾ 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부 기준 충족 활동 보고 가능
중요성 기준 도입 (De minimis threshold)	없음	경제활동의 누적 금액이 KPI 분모 ⁸⁾ 의 10% 미만일 경우 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 면제
공시 템플릿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위임법에 따라 정량 및 정성 정보 공시 필요• 기업 형태별 공시 템플릿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 서식 간소화로 기업 형태별 여러 템플릿을 하나로 대체하여 데이터 포인트를 70%까지 축소• New Template 제시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에 수록)
DNSH 기준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격한 DNSH 기준 적용• 복잡한 관리 기준 및 EU 중심 데이터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DNSH 기준 간소화에 대한 공개 협의 진행 예정• 기준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이고, 증거/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요구
은행의 Green Asset Ratio(GAR) 계산 단순화	CSRD 의무공시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포함하여 GAR 계산	CSRD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는 GAR 계산 시 분모에서 제외

6) EU 2020/852 제8조(Taxonomy Regulation)의 예외로 EU 옴니버스 개정안에 Article 19b(Optional taxonomy reporting for certain undertakings), 29aa(Optional taxonomy reporting for certain parent undertakings)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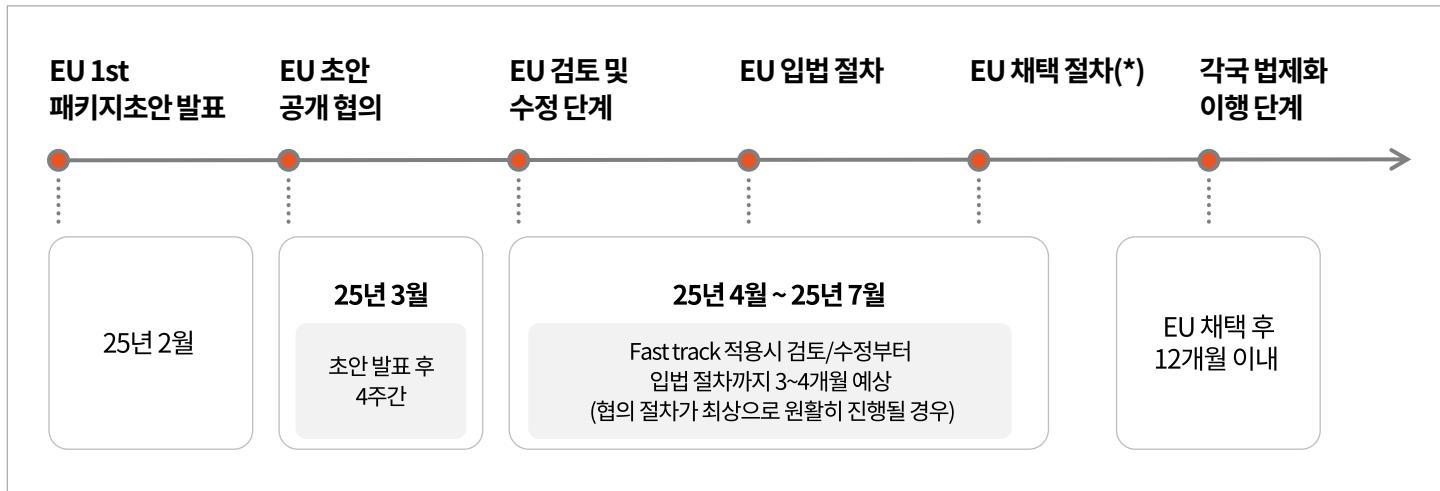
7) Substantial contribution(SC)- 해당 경제활동이 6대 환경 목표(기후변화완화, 기후변화적응, 수자원 보호, 순환경재로의 전환, 오염 예방 및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중 하나에 기여하는지 여부, Do No Significant Harm(DNSH)- 해당 활동이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지 여부

8) KPI 분모는 공시위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금융기업은 매출, 자본적지출, 운영지출 총액, 금융기관은 자산 총액

3. EU 옴니버스 대응 방안

2025년 2월에 발표된 EU 옴니버스 제안은 1차 초안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적용 기업 범위, 적용 시기 및 공시 범위 등 최종 확정까지 변경될 불확실성 요소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옴니버스 제안을 신속채택(Fast-Track adoption) 대상으로 제안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반영한 예상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U 옴니버스 법제화 예상 Timeline



* EU 옴니버스 채택 필요 요건: EU 회원국의 55% 이상,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 대표 국가 찬성 필요

기존 2026년 공시 예정 Wave 2 기업 관점

- CSRD 법제화 미완료 국가⁹⁾: 자국 CSRD 법제화를 EU 옴니버스 입법 절차와 조율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별 법제화 방향이 옴니버스 패키지 입법 절차에 맞춰 진행된다면, Wave 2에 속한 기업은 2027년 정보 공시 대상 적용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바, 2년간의 준비기간을 활용하여 공시 체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CSRD 법제화 완료 국가: 자국 CSRD 법제화가 완료된 국가의 경우, 2026년 공시 여부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각 국가에서 확정한 CSRD 법령을 일시적 중지하거나, EU 옴니버스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현행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령을 중지한다면 2027년 정보 공시 의무화 가능성이 높으며, 유지한다면 예정대로 2026년 공시 이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EU의 옴니버스 채택 결의와 각 국가의 개정 CSRD 법제화 현황을 적시성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9년 공시 예정 역외 대기업 관점

- EU 역외 모기업 공시 요구사항을 정의한 CSRD Article 40(a) 개정안에 따르면, EU 역내 대기업은 회계지침상 대기업 요건¹⁰⁾을 적용함에 따라 임직원 1,000명 초과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EU 역내 회계 지침상 대기업 종속기업 또는 사무소(순매출 €50M 초과)가 존재하고, EU 역내 총 매출이 € 450M 초과시 역외 모기업은 연결관점의 EU CSRD 공시 대응 체계 수립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EU 옴니버스 패키지 최종 버전에서 EU 역내 대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9)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독일, 아이슬란드,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룩셈부르크.

10) 다음 셋 중 둘 이상 (임직원 250명, 매출 € 50M 초과, 자산 € 25M 초과)

4. 결론



불확실성 속에서의 ESG 전략과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

EU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도전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 범위와 시행시기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경영환경일수록 기업 본연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ESG 리스크와 기회를 철저히 선별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ESG 전략 추진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기업 가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지금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한 공개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음을 견지하고, 지속가능경영 정보 생성 체계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삼일PwC Sustainability Platform Partners

권미엽 Partner

miyop.kwon@pwc.com
+82-2-709-7938

김도연 Partner

kim.doyeon@pwc.com
+82-2-709-4079

김한내 Partner

han-nae.kim@pwc.com
+82-2-709-8797

박경상 Partner

kyoungsang.park@pwc.com
+82-2-3781-0029

심재경 Partner

jea-kyoung.shim@pwc.com
+82-2-709-7083

이진규 Partner

jin-kyu.lee@pwc.com
+82-2-3781-9105

이보화 Partner

bo-hwa.lee@pwc.com
+82-2-3781-0124

정우진 Partner

woojin.jung@pwc.com
+82-2-3781-1741

삼일PwC Sustainability Platform CSRD 전문 컨설턴트

김지민 Director

ji-min_3.kim@pwc.com
+82-2-709-8144

이승준 Senior-Manager

stephen.lee@pwc.com
+82-2-709-8713

이호경 Senior-Manager

hokyoung.lee@pwc.com
+82-2-3781-0094

www.samil.com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본 자료는 2025년 2월 26일 EU 집행 위원회가 발표한 EU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EU Omnibus Proposal - Simplification Omnibus Package)에 근거하여 삼일PwC Sustainability Platform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26일 이후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동 자료의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의 목적은 EU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EU Omnibus Proposal - Simplification Omnibus Package)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서 이 자료의 활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삼일 PwC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